

주인의식과 생산자 단체

본지는지난 11월 호로 창간 13주년기념호를발간하였으며, 이 기념호의 특징을 통해서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계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되었다.

제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주인의식을 갖자는 소리는 관(官)이나 민(民)을 할것없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청에 가보아도 곳곳에 주인의식을 갖자는 표어가 눈에 띈다.

그러나 양계업계의 주인의식문제는 지난달에 사회운동의 하나로 나온 말은 결코 아니다. 벌써 몇년전부터 농장의 주인은 있어도 업계의 주인은 없다는 소리가 뜻있는 분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정부에서도 사회정화운동으로 의식개혁 9대 실천요강을 발표하였는데 이중하나가 민주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범국민적인 주인의식갖기운동과 우리업계의 주인의식운동이 시기적으로 합치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시민의식 수준에서 주인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안에 속해있는 양계업계도 별수없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없이 사회발전없으며 양계산업의 주인없이 양계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몇 독자들의 주인의식에 대한 의견이 있어 지난 호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코자 한다.

주인의식의 중요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다. 건전한 의식없이 건전한 행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여전에서 같은 일을 하여도 주인의식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그 질(質)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때 창의력이 생기고 자력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욕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기반성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게 됨은 물론이다.

우리가 몇몇 양계장을 이미 소개한 바주인의식을 갖춘 농장과 그렇지 못한 농장간의 생산비 차이는 계란에서 개당 8원 브로일러의 경우 kg당 150원 까지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농장뿐이 아니고 산업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모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잘해줄 것이다 하는 의타심 때문에 자기뜻대로 되지 않을때 정부를 원망하게 된다.

요즈음 TV나 신문잡지 등 언론들도 대부분 어느 문제를 제기하고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같이「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까」하고 끝나는데 이제는우리 모두 정부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데 대하여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시민의식을 갖는 국민에 편의주의 사고를 갖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교수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민간주도를 부르짖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운명체 의식을 갖고 뭉치자는 의견인데 생산자단체의 중요성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민간단체가 구심점이

되어야하고 이의 발전은 회원의 노력없이 불가능함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다. 다만 이 기회에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 할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서비스 보다는 공동이익을 대표하는 업자들의 모임인 생산자단체가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서비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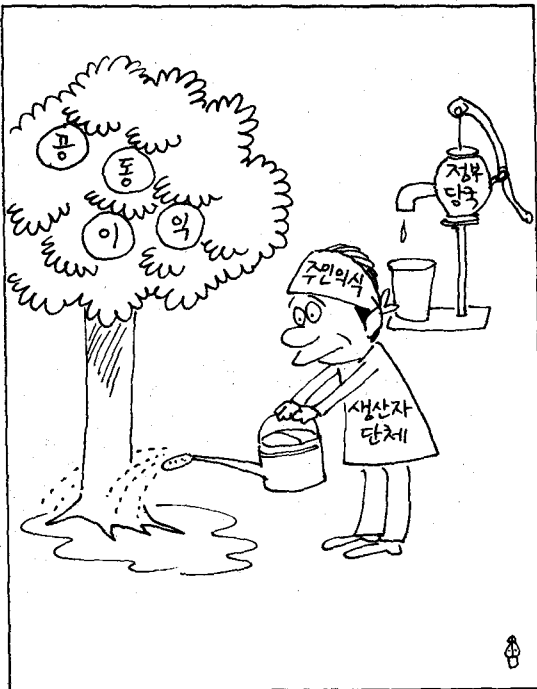
지원하여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모금활동을 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경비에 대한 면세조치등으로 도와준다면(미국의 check off system)또는 업계의 연구 및 활동상황을 정부가 정책화해주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주며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각종정보를 제공해서 지도해 주는 방법 등을 들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로운 의견도 아니며 이미 본지를 통해서 수차 거론되었으나 주인의식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선 주인의식을 갖는 일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안한다.

편집자와 다른 의견이나, 이에 공감하는 독자들의 소리를 본지에 많이 할애코자 한다.

독자들의 많은 투고를 바란다.



국세청
사업 효율표
제정

금년도 이제 한달 후면 모든 사업을 결산하고 83년도 사업으로 새출발을 하게 된다.

축산업에 대한 82년 1년간의 결산에 따라 83년 5월중에 소득세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양계업자들은 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과세를(인정과세) 당하게 되고 소득을 산출하는 기준은 배합사료 구입량에 일정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된다.

세무서에 따라서 생산비중 사료비가 접하는 비율을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70%로 할 때와 60%로 계산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에서 10여%가 차이가 나게 된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곤 하였다.

항상하는 말이지만 철저한 기장에 의하여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좋은방법이 없음에도 한국적 유통구조 현실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

또 국세청은 많은 양축가들이 최근 사료 구매 실적이 세무자료로 노출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사의 평수에 따라 외형을 산출하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서 산하 각 세무서에 통보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축산업에 대한 사업효율표이다. (82년도 사업분부터 적용)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9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81. 12. 31. 개정) 6항에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는데 기장을 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기장을 하였어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추계조사)을 함에 있어 다음 4가지중의 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①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같은 업자의 예에 준해서 계산하거나

②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번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③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 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해의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사료 구입량으로 외형을 정하는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 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 회전율
- 라) 매매 총이익율

이번 축산업에 대한 82년도 사업효율표의 제정은 세무담당관에 재량권을 줄이고 공평과세를 기한다는 국세청측의 명분이 있으나 계사의 면적에 따라 외형을 정할 경우 불황기에 자율적 생산조절 등으로 계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게 된다.

또 최근에는 케이지의 모양이나 배열에 따라 평당 사육수수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적용할 지도 의문이다.

사료구매액수로 계산하거나 계사 평수비율로 하거나 어느 방법도 공평을 기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기장으로 정당한 납세를 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와야되겠다.

참고로 사업효율표를 제재하니 배합사료로 추정하는 것과 사전에 외형액을 계산해서 추계과세시 부당한 피해는 입지 않아야 하겠다.

사업효율표

I. 총 칙

1. 사업효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을 추계 조사결정시 적용한다.

단, 총수입금액 신고시에는 무기장사업자의 신고권장용으로 사업효율을 활용할 수 있다.

2. 사업효율은 업종별로 적용한다.

3. 다음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효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년도중 신규사업자

나. 당해년도중 휴폐업자

4. 사업효율은 82. 1. 1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5. 수입금액 산출을 위한 연평균 단위당 판매가



격, 1인당 수장료 등은 각지방 국세청장이 지역별로 매년 12월20일까지 조사결정한다.

단, 연평균치의 산출시에 월 또는 일수를 가중치로 계산한다.

II. 사업효율

1. 축산업

가. 산란계

구분 계사별	계사단위면적당사육마리수		폐계년 회전율	일산란율
	평당	m ² 당		
평사 (Battery)	49.6 수	15.0 수	69.7%	52.2%
케이지사 (Cage)	23.7	7.2		

<적용방법>

총수입금액 = 계란판매수입 + 폐계판매수입 + 기타 부수수입

1) 계란판매수입 = 1일평균 사육마리수 × 일산란율 × 365일 × 계란판매단가

※ 1일평균사육마리수 = (평사총면적 × 평사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 + (바타

리사 총면적 × 바타리사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 + (케이지사 총면적 × 케이지사 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

2) 폐계판매수입 = 1일평균 사육마리수 × 폐계년회전율 × 폐계판매단가

3) 기타 부수수입 = 계분판매수입 + 공대판매수입 (적용시 유의사항)

1) 계사별 총면적은 계사층별 면적의 합계로 한다.

2) 1일평균 사육마리수의 산정에는 병아리를 포함한다.

※ 폐계년회전율 및 일산란량의 제정시 병아리를 감안하였음.

3) 1일평균 사육마리수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나. 육 계

구분 계사별	계사단위면적당사육마리		연회전율	비 고
	평당	m ² 당		
평사	35.2 수	10.7 수	579.2%	
바타리사 (Battery)	31.2	9.5		
케이지사 (Cage)	30.0	9.1		

<적용방법>

총수입금액 = 육계판매수입 + 기타 부수수입

1) 육계판매수입 = 1일평균사육마리수 × 연회전율 × 육계판매단가

※ 1일평균사육마리수 = (평사총면적 × 평사단위면적당사육마리수) + (바타리사총면적 × 바타리사단위면적당사육마리수) + (케이지사총면적 × 케이지사단위면적당사육마리수)

2) 기타부수수입 = 계사판매수입 + 공대판매수입 (적용시 유의사항)

1) 계사별 총면적은 계사층별 면적의 합계로 한다.

2) 1일평균 사육마리수의 산정에는 병아리를 포함한다.

※ 폐계 연회전율의 제정시 병아리 감안하였음.

3) 1 일평균 사육마리수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 양 돈 (단위 : 마리)

돈사단위면적당사육마리수		연회전율	판매시평균중량
평균	m ² 당		
1.71 수	0.51 수	204.0%	89.5kg

<적용방법>

총수입금액 = 양돈판매수입 + 기타부수수입

1) 양돈판매수입 = 1 일평균사육마리수 × 연회전율 × 판매시평균중량 × kg당 판매단가

※ 1 일평균사육마리수 = 돈사총면적 × 돈사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

2) 기타부수수입 = 운분판매수입 + 공대판매수입

(적용시 유의사항)

1) 1 일평균 사육마리수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돈사총면적의 산정시 총면사면적은 제외한다.

라. 비육우

(단위 : 마리)

우사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		연회전율	판매시평균중량
평균	m ² 당		
0.61 수	0.18 수	79.4%	440.3kg

<적용방법>

총수입금액 = 비육우판매수입 + 기타부수수입

1) 비육우판매수입 = 1 일평균사육마리수 × 연회전율 × 판매시평균중량 × kg당 판매단가

※ 1 일평균사육마리수 = 우사총면적 × 우사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

2) 기타부수수입 = 운분판매수입 + 공대판매수입

(적용시 유의사항)

1) 1 일평균 사육마리수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우사총면적의 산정시 종우사면적은 제외한다.

3) 중우를 매입하여 사육하는 경우의 연회전율은 중우의 성장정도를 실지조사하여 연회전율을 산정, 활용한다.

마. 젖소

(단위 : kg)

산 령 별	초산	2 산	3 산	4 산	5 산	6 산	7 산	8 산이후
마리당우유연생산량	4,020	4,694	5,121	5,072	4,494	4,204	3,942	3,670

<적용방법>

총수입금액 = 우유판매수입 + 기타 부수수입

1) 우유판매수입 = { (초산젖소마리수 × 초산젖소의 우유 연생산량) + (2 산젖소마리수 × 2 산젖소의 우유 연생산량) + (8 산젖소 마리수 × 8 산젖소의 우유 연생산량) } × 우유 kg당 판매단가

2) 기타 부수수입 = 운분판매수입 + 공대판매수입 + 독우판매수입

바. 사 슝

(단위 : 녹용g · 녹혈 cc)

구분 사슴연령별 종류	마리당녹용연생산량			마리당녹혈연생산량			자 룝 생 산 율 (%)			자 룝 체사율 (%)
	1 이상	2~7세	8세이상	1세이상	2~7세	8세이상	1세이하	2~7세	8세이상	
꽃 사 슝	g	228.1g	171.3g	cc	359.7cc	231.6cc	.	81.1%	18.2%	13.6
레 드 디 어	.	1,176.4	.	.	567.5	.	.	91.5	.	8.3
엘 크	304.1	1,876.3	1,056.3	177.4	7623	646.0	.	68.4	38.5	12.7

〈적용방법〉

총수입금액 = 녹용판매수입량 + 녹혈판매수입 + 자
 녹판매수입 + 기타부수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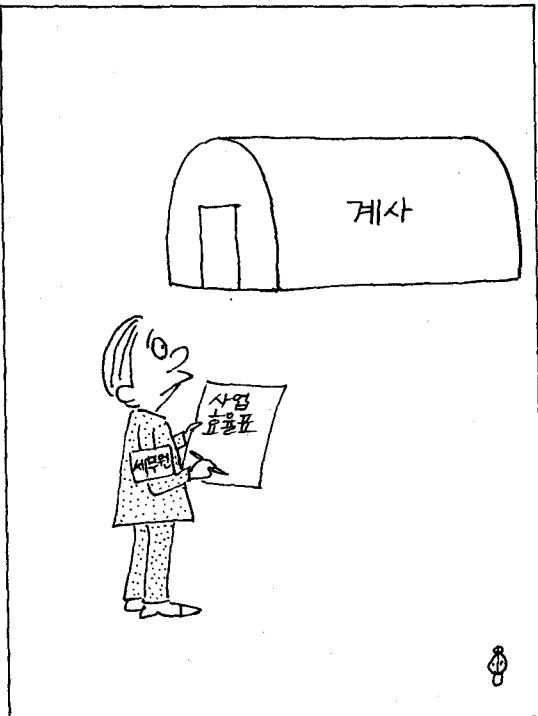
1) 녹용 또는 녹혈판매수입 = { (1세이상 수 사
 슴 1일 평균사육마리수 × 1세 이하
 수사슴 마리당 녹용 또는 녹혈연생산
 량) + (2~7세 수사슴 1일평균 사육
 마리수 × 2~7세 수사슴 마리당 녹용또
 는 녹혈연생산량) + (8세이상 수사슴
 1일평균 사육마리수 × 8세이상 수사
 슴 마리당 녹용 또는 녹혈 연생산량) }
 × 녹용 g당 또는 녹혈 cc당 판매단
 가.

2) 자록판매수입 = { (2~7세 암사슴 1일평균 사
 육마리수 × 2~7세 출산율) + (8세 암
 사슴 1일평균 사육마리수 × 8세이상
 출산율) - 자록폐사마리수 - 자록중자
 가사육마리수 } × 자록 마리당 판매가
 격

※ 1일평균 사육마리수

$$= \frac{\text{매월말 현재 사육마리수 합계}}{12}$$

※ 자록 폐사마리수 = 자록마리수 × 자록폐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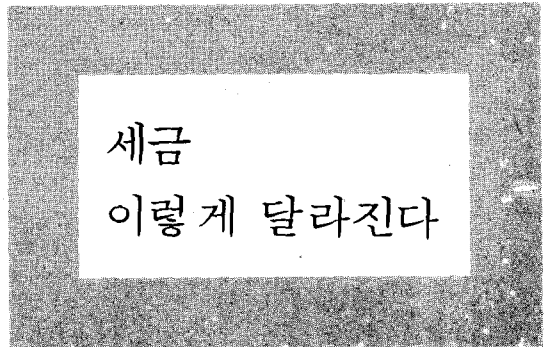
〈적용시 유의사항〉

1) 녹용, 녹혈, 자록의 판매수입은 사슴종별로
 계산, 합산함으로써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 자록 마리수 및 폐사마리수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자록마리당 판매가격은 총칙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사한 수사슴과 암사슴의 평균가격에 의
 한다.

4) 1일평균 사육마리수의 계산시에는 소수점 두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11월호에 소득세법중 축산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재무부 의견을 본란을 통하여 소개한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의 큰 관심사인 조
 세감면규제법을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
 성하여 심의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확정 되었기
 에 소개한다. 물론 이는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
 통령공포 라는 절차를 남겼지만 관계에 따라 이
 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1. 농가부업 양축규모의 증가

농가부업규모의 가축두수

가 축 별	현 재	개 정
젖 소	10 두	20 두
고 기 소	20 두	30 두
돼 지	100 두	150 두
닭	1,000 수	3,000 수

정부는 농가부업축산의 규모를 1,000수 에서
 3,000수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전체 양계농가

닭 사육규모별 사육가구수 및 사육수수

1982년 9월 30일 현재

구분	합 계	1~19수	20~49	50~199	20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999	3,000~4,999	5,000~9,999	10,000~29,999	30,000~49,999	50,000 이상
가구수	737,571	711,130	14,670	1,240	407	1,028	1,132	999	1,865	2,288	1,966	746	58	42
마리수	51,608,929	4,094,120	357,990	95,544	138,925	745,661	1,276,650	1,678,539	4,289,051	8,459,128	13,081,273	11,028,744	2,057,914	4,304,390

자료 : 농수산부

737,571호중 0.69%에 해당하는 5,100 가구만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국 양계농가의 99.3%에 해당하는 706,030 호가 농가 부업규모로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소득세 부과대상이되는 5,100가구가 사육하고 있는 닭의 수수는 전체 51,608,929수의 75.4%에 해당되는 38,932,449수에 이른다. 또 소득세부과 대상이되는 5,100가구중 외형이 비교적 큰 10,000수 이상은 846호에 해당된다.

2. 소득세감면은 50%에서 20%로

또 우리의 큰 관심이었던 신규업자에 대한 소득세 50%의 5년간 감면도 당초 정부안은 폐지키로 하였으나 국회 재무위 소위원회에서 심의중 정부안을 폐기하고 50% 감면에서 20%감면으로 개정함으로써 83년도 사업분부터 30%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본회에서는 국회재무위원회에 현행대로 50% 감면을 계속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었다.

물론 이 감면기간도 86년 12월 31일로 모두 끝나게 된다. 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업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할 경우로 확대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損金算入)에 허용하는 범위에 농협 수협외에 축협까지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양계업 발전은 양계인의 주인의식으로 부터